

奴婢賣買文記의 吏讀文과 吏讀解讀*

오창명**

目次

1. 들어가는 말
2. 奴婢賣買의 法制化
3. 吏讀文과 吏讀의 解讀
 - 3.1. 所志(題音 포함)
 - 3.2. 明文
 - 3.3. 招辭(財主)
 - 3.4. 招辭(證·筆執)
 - 3.5. 立案
4. 마무리

1. 들어가는 말

1.1. 이 글은 많은 고문서 중 하나인 奴婢의 매매에 관련된 여러 문기의 이두문과 이두 형태를 분석한 것이다. 노비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 신분사회에서 특수한 신분이었다. 이에 대한 매매와 그와 관련된 내용의 파악은 사회경제사, 법제사 등을 연구하는 사람의 뜻이고, 우리의 주된 관심은 實用文인 吏讀文과 그에 쓰인 吏讀項目의 형태분석과 의미파악이다. 이러한 연구는 한글 창제 이전의 중·고대국어의 연구에 도움을 줄 것이다.

* 이 글은 제1회 백록어문학회의 학술발표회(94년 11월)에서 講讀했던 것을, 자료를 달리하고 보충하여 쓴 글임을 밝혀둔다.

** 济州大 講師, 檳國大 大學院 博士課程 修了

1.2. 奴婢(사내종과 계집종)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 신분제 사회에서의 최하층 신분으로, 騦人의 대표적 존재였다. 우리 나라의 전근대 신분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신분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노비는 소위 지배층, 곧 兩班에게 있어서는 農土로서의 토지와 가옥 등과 함께 중요한 재산이었다. 전국의 절대농경지를 소유한 왕실 및 양반계층은 노비를 통해서 농사를 짓고 집안의 갖가지 일을 시켰다. 결국 奴婢制社會는 良賤制社會는 奴婢는 말·소와 같은 財貨로서의 가치는 물론 財貨增殖 手段, 일상생활의 필수도구, 양반사회 유지의 수단 등으로 중요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노비매매는 田畠·家屋 따위의 財產과 같이 일찍부터 이루어졌었다.¹⁾

2. 奴婢賣買의 法制化

2.1. 奴婢賣買에 대한 법규정 : 노비의 매매는 고대사회에서부터 행해졌으나, 법 제화는 <大明律>을 들여와서, 법으로 시행하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대명률>은 명나라의 법률이면서도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시대까지도 우리 나라의 刑事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조선초기인 세종 6년(1460)에 공식적으로 田地의 賣買가 허용되었고, 이때부터 재산으로서의 奴婢의 매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당시부터 관의 認證制度를 도입하였다. 세종 23년에 田地賣買時 일정한 稅를 내고 官印 증서를 교부 받지 않거나 토지대장의 명을 변경하지 않은 사람은 <大明律> 戶律 '典買田宅'²⁾조에 준하여 논죄한다고 규정한 것이 그것

1) 奴婢의 身分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들이 참고된다.

유승원(1987), <조선초기신분제연구>, 을유문화사.

이성무(1987), <조선시대 노비의 신분적 지위>, <한국사학>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영훈(1987),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 노비의 경제적 성격>, <한국사학>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현재(1986), <조선초기의 노비법제>, <경상사학>2, 경상대 사학과.

지승종(1988), <신분개념정립을 위한 시론>, <한국 고·중세 사회의 구조와 변동>, 문학과지성사.

平木實(1982), <조선후기 노비제 연구>, 지식산업사.

이외에도 많은 논문이 있지만, 앞으로 私奴婢의 신분적 지위와 그 하위분류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2) 凡典買田宅 不稅契者 答五十 仍追田宅價錢一半入官 不過割者 一畝至五畝答四十 每五畝加一等 罪止杖一百 其田入官 / 무릇 田畠과 가옥을 賣買하고 稅契를 내지 않은 사람은 불기 50대의 刑에 처하고, 이어서 전답과 가옥 가격의 절반을 관에 납부한다. 田宅을 가진 사람이

이었다. 그러다가 <經國大典>(1485) 戶典 ‘買賣限’條의 가옥·토지의 경우와 같이 노비를 賣買한 뒤에 물릴 수 있는 기한을 매매한 뒤 15일로 정하였고(15일이 지나면 변경할 수 없었다), 100일 이내에 관청(掌隸院 또는 地方官)에 신고하여 증명서(立案)를 발급 받도록 규정하였다.³⁾ 그리고 신고없이 매매하면 노비와 그 對價를 관아에서 몰수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조상이 부리던 노비는 원칙적으로 매매할 수 없으며, 입안을 발급받기 전에 출생한 노비 2세는 國有로 한다고 하였다.

2.2. 奴婢賣買價 : 고려시대의 노비제는 매우 문란하였기 때문에, 奴婢 한 구의 값이 牛馬의 값만도 못하였다. 이 당시의 노비 한 구의 값은 五升布 150필 정도에 해당하였다. 말 한 필이 400~500필 정도였으므로 말 한 필의 값이 노비 두 세 口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1398년의 기록에는, 당시까지도 노비 한 구의 값이 비싸야 五升布 150필 정도였는데, 15세 이상 40세 이하는 五升布 400필, 14세 이하 41세 이상은 五升布 300필로 개정하였다. <경국대전>(5, 刑典, 私賤)의 규정에 의하면, 나이 16세 이상 50세 이하의 壯年노비의 값은 楷貨 사천 장이고, 15세 이하 50 세 이상의 노비는 楷貨 삼천 장으로 규정하였는데,⁴⁾ 당시 上等馬의 값은 楷貨 사천 장 정도였다. 당시 노비 한 口의 값은 쌀로 치면, 스무 섬 정도였다.

16세기 중반에 매매교환의 가치는 楷貨나 무명(木綿布)으로 정하였는데, 楷貨는 조선초기의 닥나무 껌질로 만든 종이 돈이다. 楷貨는 고려말부터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으나 1512년(종종7)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조선 태종 때 楷貨 한 장은 쌀 두 말(斗), 常五升布 한 필(疋)과 교환가치를 가졌었으나, 나중에는 쌀 한 말(斗)로 책정되고 <경국대전>(2, 戶典, 國幣)에 이르러서는 楷貨 한 장은 쌀 한 되(升)로, 楷貨 스무 장은 常布 한 필로 규정하였다.⁵⁾

名義變更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 留(留)에서 다섯 留까지는 불기 40대의 刑에 처하고, 매 한 留마다 한 等을 더하되 곤장 백 대의 刑에서 그친다. 그 田畜은 관에서 没收한다. <대명률>
(戶律典買田宅)

戶典,買賣限)

- 4) 凡買賣奴婢告官 私和買賣者其奴婢及價物并沒官 年十六以上五十以下價 楷貨四千張 十五以下五十一以上 三千張 <經國大典>(5,刑典,私賤注)
- 5) 國幣通用布楷貨(正布一匹准常布二匹 常布一匹准楷貨二十張 楷貨一張准米一升 凡徵贖全用楷貨買一半用之) / 나라의 돈은 布와 楷貨를 통용한다. · 正布(五升布) 한 필은 常布(三升布) 두 필에 준하고, 常布 한 필은 楷貨 스무 장에 준하고, 楷貨 한 장은 쌀 한 되에 준한다. 대개 賦身을 징수할 때는 오로지 楷貨를 사용하고, 값을 치를 때는 절반을 楷貨로 사용한다.)
<경국대전>(2,戶典,國幣)

2.3. 노비매매에 대한 認證制度와 認證節次 : 본격적인 노비매매에 대한 인증제도는 <경국대전>(2, 戶典, 買賣限)의 규정에서 시작된다. 노비는 토지나 가옥 등과는 달리 生動的인 재산으로서, 출산·사망·사고 등으로 인한 增減이 있을 수 있고, 도망할 가능성도 항상 있으므로, 官의 認證이 더욱 필요했다. 노비의 매매는 통상 매매당사자가 사전에 거래허가를 받은 뒤에 거래의 절차를 거쳐, 관에 신고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완료된다.

노비매매에 대한 인증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매매당사자(곧 財主인 賣渡人과 買受人)와 證保(증인), 筆執(문서를 쓰는 사람)이 입회한 가운데 매매문기를 작성하였다. 이를 통상 明文이라 한다. 둘째, 관의 입안(인증서)을 받기 위하여 매수인이 입안을 신청하는 所志를 작성하여, 新·舊의 매매문기를 첨부하여 판아에 제출한다. 셋째, 판에서는 제출된 粘連文記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으면, 소지의 원편 아래 여백에(혹은 소지의 뒷면 여백 따위에) 입안을 발급한다는 처분(제김, 題晉)을 내·리고 매수인에게 돌려보내며, 賣渡人(財主)과 증인, 필집 등을 불러 매매사실을 진술 받는 招辭를 받아 입안을 발급한다. 이상이 있으면 이상의 있는 사항들을 조사하여 처리하라는 제김을 내린다. 넷째, 관에서立案을 발급할 때 소지, 매매문기(明文), 招辭(재주, 증인과 필집 등), 관의立案 등을 粘連하고, 점련한 곳과 초사, 입안의 여러 군데에 관인을 찍은 뒤에, 입안 신청자에게 주면 이로써 노비매매에 대한 인증이 이루어진다.

양반의 노비매매는 양반이 직접 재주가 되어 매매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양반으로부터 위임받은 奴(代奴, 差奴)에게 대행시키는 형식을 취하였다. 所志를 올릴 때도 양반이 그 집의 사내종의 이름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에는 양반이 奴에게 매매를 위임한다는 배지(牌字)를 내주었고, 관의 인증을 받을 때 이 배지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대개의 매매는 영구적인 매매였으며, 이중매매인 경우에는 곤장 100대, 流 3천리의 刑을 내리는 등 엄벌에 처하였다.

2.4. 奴婢賣買文記의 構成과 形式上의 特徵 :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점련된 매매문기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비매매에 대해 인증해 달라

세종 6년(1460) 당시에는 나라의 화폐를 五升布를 上等, 三升布를 中等, 楠貨를 下等으로 구분하였으니, 常布는 三升布에 해당한다.

는 所志와 관의 처분인 제김(題晉)이 있다. 물론 題晉은 단독문서가 아닌, 관의 처결문이다. 소지는 干支(대개 조선전기까지는 大國年號), 소지를 올리는 사람의 품관과 직제(혹은 居住地), 성명, 수결(이상 서두부분), 소지를 올리는 事由와 처결해 달라는 바람(이상 中·結辭부분), 처분기관과 소지 작성 연월일(이상 末尾)을 쓴다. 이어 관에서 소지의 왼쪽 아래에 처분사유, 처분자, 처분자의 수결을 한 제김(題晉)을 덧붙인다. 둘째, 양반이 사내종에게 대리시킬 때에는 배지(牌字)를 써서 주었는데, 매매할 때이나 관의 입안을 받을 때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셋째, 매매하는 明文이 있다. 明文에는 大國年號와 매수인의 이름(이상 서두부분), 매도하는 事由, 해당노비의 傳來處, 口數, 가격 등(이상 中辭부분)을 쓰고, 매도인(재주)·證保·필집의 성명과 수결(이상 末尾)을 한다. 수결은 벼슬이 있는 사람이 하고, 벼슬이 없고 賤人인 경우는 手寸(左寸 또는 右寸)을 한다. 넷째 재주와 증보, 필집들이 매매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인 招辭가 있다. 招辭에는 진술 연월일과 진술자의 이름(이상 서두부분), 진술내용(이상 中·結辭부분), 수결(이상 末尾)로 이루어진다. 다섯째, 노비매매에 대한 관의 認證書인 立案이 있다. 입안의 내용은 입안 작성 연월일과 확인·발급기관을 밝히고(이상 서두부분), 입안하는 이유(이상 中辭부분), 판결내용(이상 結辭부분), 입안 담당자의 이름과 수결(이상 末尾)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노비매매문기가 이러한 것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은 몇 안된다. 특히 16세기 이전의 고문서 자료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이다. 그 나머지는 대부분 따로 따로 전하는 경우, 혹은 일부를 탈락한 경우이다.

3. 奴婢賣買文記의 吏讀文과 解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노비매매문기는 <경북지방고문서집성>의 粘連文記 248번으로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고른 특별한 이유는 없다. 다만 가급적 노비매매문기로서 온전하게 유지되고 탈락된 것이 거의 없는 것, 그러면서도 이른 시기의 吏讀를 반영하는 吏讀文을 찾는 과정에서 선정한 것이다.

이 노비매매문기의 작성연대는 1548년(명종3년)이고, 財主(賣渡人)는 경주에 사는 驛人 열금(於乙今)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다. 買受者는 당시 경주의 良佐洞에 살았던 良洞孫氏의 후손인 孫光曙이다. 이는 16세기의 인물이

다. 賣渡事由는 賣渡者가 가난하였기 때문이었다. 매도가격은 계집종 두 구(스물한 살, 한 살)에 楠貨 8천 장의 가격에 절충한 常木綿 여덟 동(同)이었다

노비매매문기의 구성은 所志 한 件, 매매문기인 明文 한 件, 招辭 두 件, 관의立案 한 件이 粘連되어 있다. 해독의 편의상 소지는 3.1., 제김(題音)은 3.2., 明文은 3.3., 招辭는 각각 3.4.와 3.5.,立案은 3.6.의 번호를 매겨, 논의한다.

3.1.1. 良佐洞接忠義衛孫光曙 (手決)

이 구문은 所志의 첫머리로, 보통 所志를 올리는 사람의 출신지, 관직, 성명, 수결 등이 나타난다.

良佐洞은 당시 경주 安康縣 안의 한 마을로, 오늘날 경북 월성군 강동면 良洞里를 말한다. 이곳은 良洞孫氏의 본관으로, 宗家가 있는 곳이다. 接은 連接의 의미로, 조상 대대로 살고 있다는 뜻이다. 忠義衛는 조선시대, 五衛의 하나인 忠佐衛에 소속된 군대로, 功臣의 적자손 및 침자손 등이 이에 소속되었다. 손광서의 高祖인 孫昭가 功臣이었다. 手決은 도장 대신에 자기의 姓名 밑에 하는 일정한 표식인데, 官職이 있는 신분만이 수결을 할 수 있었다.⁶⁾

3.1.1') [慶州 安康縣의] 良佐洞에 사는 忠義衛 손광서 (수결)

3.1.2. 右謹言所志矣段

이 구문은 所志 내용의 전체 主語에 해당하는 것으로, 所志 내용의 結辭 부분인 行下向教是事(行하아이산일) : [立案]을 내려주실 일)의 구문과 호응한다.

右는 훈독자로 '님, 임/우[의]' 또는 음독자로 '우[의]'로 읽히며,⁷⁾ '위[또는 오른쪽]'의 뜻이다. 곧 '위에 [말한 사람 또는 내용]'이라는 뜻을 가진 吏讀다. 謹言

6) 관직이 없는 사람이나 奴婢의 手決은 明文 분석 항을 참고할 것.

7) 이 우호 몸 공경홀 이름 너비 나르니와 = 右는 廣敬身이라 <번소 8:43>

無上士는 尊呼사 더운 우희 가치 삿기치니 <월곡 61> / 上 웃 상 <신합, 상:2>

날로 다못한야 무로며 對答호미 이의서 떠 호미 있느니(與余問答既有以) <두해초 16:48>

이의 즈라 글 헝기에 나아가 = 就長就學한야 <소해 4:5>

은 삼가 아뢴다는 뜻이다. 所志는 '소지'라 읽히며,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나 청원·바람 따위의 일이 있을 때 官에 올리는, 일종의 訴狀이다.⁸⁾ 문맥상황에 따라 '所志를 올리다'의 동사로 해석할 수도 있다. 矣段은 '의(의)든'으로 읽히며, '-의 것은, -하는 것은'의 뜻이다.⁹⁾ 矣는 유정명사에 연결되는 속격조사 '의/의'의 표기이다. 段은 의존명사 '드'와 주제를 뜻하는 특수조사 'ㄴ'이 통합된 표기이다.¹⁰⁾ 等(드)은 의존명사이지만 '뜻, 趣旨' 정도의 뜻이 된다. 謹言所志矣段의 해독은 '삼가 아뢰어 所志를 올리는 것[뜻]은' 정도가 된다.

3.1.2') 위 사람이 삼가 아뢰어 所志를 올리는 뜻은

3.1.3. 驛人於乙今亦中婢子二口得買爲白遣

이 구문에서는 買受處(곧 賣渡人), 奴婢의 口數 등을 알게 해준다.

驛人은 驛站에 소속되어 심부름 따위를 하는 驛吏·驛卒을 총칭하는 말이다. 於乙今은 '얼금'의 人名 표기이다. 亦中은 '여기>여히'로 읽히며, 여격조사로 쓰여, '에게, 에께서'의 뜻이다. 婢子는 계집종이란 뜻이다. 口는 노비 따위를 세는 수량단위 명사다. 조선전기까지는 주로 口가 쓰였고, 조선후기에 이르러서 가끔 名이 쓰이기도 하였다. 買得은 돈이나 다른 물품 따위로 사거나 바꾸어서 얻었다는 뜻이다. 爲白遣은 '하^술고'로 읽히며, '-하^음고, -하고'의 뜻이다. 동사어간 爲(하)와 겸양의 선어말어미 白(-^술), 원인이나 이유·근거의 뜻을 가진 연결어미 遣(-고)의 결합이다.¹¹⁾

3.1.3') 驛人 얼금에게서 계집종 두 구를 사서 얻었고

3.1.4. 斜出爲白良結望良自去乎依他文記相考立案成給爲白只爲

8) 狀 얼굴 장 又文狀 俗稱狀子 소지 又曰告狀 <훈몽초 상:18> / 告狀 소지 정하다 <동해 하:28>

9) 所志矣段 所志者下呈上之文 矣段者語助詞 <고금석림>(40, 羅麗吏讀)

10) 段은 중세국어의 '든'에 대응한다.

擊률 자바 배 서르 보논 든 恭敬^하야 有別호물 불기개나라 = 執擊^하야 以相見은 敬章別也 | 나라 <내훈 초 1:77>

11) 道 | 能히 敎化를 돋습고 = 道能助化^하고 <능엄 1:26>

이 구문은 所志를 올리는 사람이, 관에서 다른 文記들을 살펴서, 이상이 없으면 認證한 立案을 내려 달라는 내용이다.

斜出은 '빗출'로 읽힌다.¹²⁾ '斜'는 중세국어의 동사 '빗기다(斜)'가 명사화한 것으로, '빗기/비기'(斜是, 斜只)의 생략 표기(-是/只)이다. 의미는 중세국어 '빗기다'(斜)보다는 현대국어 '베끼다'의 뜻인 '비기다(藉,憑,依)'에 가깝다.¹³⁾ 곧 '빗기'는 글을 보고 읊겨 쓴다는 뜻으로, '땅·집·노비 따위의 소유권이나 어떤 권리를, 다른 문서에 기대어 [증거로 하여] 관에서 증명하여 내준 문서'를 말한다. 이는 '葉作/業作'(엽길)과 같은 것이다.¹⁴⁾ 斜出(빗출)은 斜只(빗기)를 내준다는 뜻의 出이 결합된 형태이다. 그래서 '빗기를 官府에서 작성하여 내어준다'는 뜻이 된다. 斜出(빗급)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爲白良結은 '호술아저(吏便)/호술라저'¹⁵⁾로 읽히며, '-하읍고져, -하읍기를'의 뜻이다. 동사어간 爲(호-)와 겸양의 선어말어미 白(-술), 바람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良結(아)/어져¹⁶⁾의 결합이다. 望良白去乎는 '부라술거온(吏便)'으로 읽히며, '바라옵전, 바라옵는 것이니'의 뜻이다. 동사어간 望良(부라-)와 겸양의 선어말어미 白(-술), 미지각 가능의 선어말어미 去, 연결어미 乎(-온)의 결합이다.

立案은 개인이 토지·노비 따위의 재산을 賣買하였을 때, 買得者가 관에 所志를 올리면 관에서 확인하고 이를 인증해주기 위해 발급해주는 문서를 말한다. 爲白只爲는 '호술기삼'으로 읽히며, '-하읍도록 하여, -하읍기 위하여'의 뜻이다. 동사어간 爲와 겸양의 선어말어미 白, 동명사어미 只, 동사어간 爲(삼)의 결합이다. 동사 爲는 본동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대개 이와 같이 접사로 사용된다.

3.1.4') 빗기를 내주옵기를 바라오니 다른 文記에 의지하여 서로 고찰하고 立案

12) 이를 이두의 복합명사로 본다. 곧 명사 '빗기'의 표기인 '斜'와 작성하여 내준다는 뜻의 '出'의 결합이다. 이를 한자어로 보고 '사출'로 읽는 경우가 있으나, 分衿을 '분깃', 衿衿을 '깃금'으로 읽는 예로 보아, 이두로 다루어야 한다.

13) 느릇 흐르는 모른 脈脉히 빗기도다(津流脉脉斜) <두해중 3:26> / 斜 빗길 샤 <신합, 하:62>
儿案은 비겨 있는 거시니 案은 너브니라 <법화 2:61> / 藉 비길 샤 <신합, 하:40> 憑 凭 비
길 빙 依 비길 의 <신합 하:44>

14) 京司則堂郎俱着押紙上(지동조) 葉作(斜只 置簿冊名)亦爲依此辭入錄 <儒胥必知>(買得斜出式)

15) <고금석립>(40, 羅麗吏讀)에서는 '爲白良結望良白去乎'를 '혹을아되어바라울거온'으로 읽고 있다.

16) 婆羅文이 닐오드 내 보아져 힌나다 술바씨 <식보 6:14>

이 몸이 俊傑이린들 님이 언제 브리시니 출하리 俗土라자 <송강·성, 하:16>

을 작성하여 내주도록 하여

3.1.5. 行下向教是事亦在謹言

行下는 ‘향하(古今)’로 읽히며, 관청에서立案 따위를 아래로 내려주는 것을 뜻한다. 向教是事는 ‘아이산일’로 읽히며, ‘앞으로 행하여 주실 일’의 뜻이다. 동사어간 向(앞-)¹⁷⁾과 존경의 선어말어미 ‘教是’(-시-), 명사 事(일)의 결합이다. 亦在는 ‘이여 견’으로 읽히며, ‘이라는 [뜻, 것]’의 뜻이다. 대개 是亦在(이여견)로 표기되어 是(이-) 또는 亦(-여)이 생략표기로 나타난다(-是在, -亦在, -在). 계사 是(이-)와 인용법 어미 亦(-라), 과거 사실의 지속을 뜻하는 선어말어미 在(-겨-)와 동명사어미(-ㄴ)의 결합표기이다.

3.1.5’) 내려 주실 일이라는 뜻으로 삼가 아립니다.

3.1.6. 府官 處分 / 嘉靖二十七年十一月 日所志

이 구문은 所志의 끝부분으로, 처리기관과 소지를 올린 연월일을 알게 한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大國年號를 쓰지 않고 干支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所志가 粘連文記가 아닌 날장으로 전해지면 연대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府官은 이 所志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기관으로, 廣州府를 말한다. 處分은 죄의 有無, 또는 어떤 일의 有無에 대한 것을 처리하여 분별한다는 뜻이다. 嘉靖은 중국 명나라 세종 때의 연호로, 가정 27년은 명종 3년(1548)에 해당한다.

3.1.6’) [경주부의] 관에서 처리하여 分別할 일 / 가정 27년(명종3, 1548) 11월 일 所志

17) 이두자 向은 向事(아안일), 向教是事(아이산일)등과 向前(아전)에 쓰인다. 전자의 경우에는 동사어간으로, ‘미래에 행할 일’이란 뜻으로 쓰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앞, 아래’(前)의 뜻으로 쓰인다. 중세국어 ‘앞.’에 대응하는 표기이다.

무퇴을아 將次人길흘 아사 가누니 유무를 베풀 바를 구펴 보내도다(登陸將首途 筆札柱所申)
<두해-초 8.53>

3.1.7. 十四日 刑 / 推閱次以證筆執等乙率來事 / 府尹(手決) 判官

이 구문은 所志의 본 내용이 아니고, 관에서 소지 뒤의 원쪽 아래여백[혹은 뒷면 여백 따위]에 덧붙이는 제김(題音)이다. 題音(데김>제김)은 題辭로도 표기되는 데, 백성이 제출한 所志 따위의 訴狀이나 願書 뒤의 여백에 쓰던, 官에서 내린 判決이나 指令을 뜻한다.

刑은 어떤 일에 대하여 다스려 판결하다 또는 통솔하여 바루거나 제어하여 판결한다는 뜻이다. 곧 제김한다는 뜻이다. 推閱은 ‘축열’(古今)로 읽히며, 어떤 일에 대한 당사자들을 審問한다는 뜻이다. 次에는 ‘초로’¹⁸⁾로 읽히며, ‘차로, 것으로’의 뜻이다. 次는 현대국어의 의존명사 ‘차’(어떤 기회를 겸해서 다른 일까지 보게 됨을 나타내는 말)에 대응하는 것이고 以는 구격 ‘(으)로’의 표기이다. 證筆執은 明文을 작성할 때의 證人과 筆執(작성자)을 말한다. 等乙은 ‘둘째’로 읽히며, 복수접미사 ‘들’과 대격 ‘을’의 표기이다. 事는 명사 ‘일’의 표기이다.

府尹은 조선시대, 光州府·慶州府 등에 있었던 종2품의 유품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를 말한다. 判官은 民事를 처리하는 재판관·심판관이란 뜻이다.

3.1.7') [1548년 11월] 14일 處決함. / 審問하는 차로 증인과 필집들을 거느리고 을 일. / 부윤 (수결) 판관

이상이立案을 청하는 所志부분과 관의 처분인 題音부분이다. 다음은 奴婢賣買의 明文이다. 所志 뒤에 점련하여 첨부한다.

3.2.1. 嘉靖貳拾柒年戊甲十一月拾參日忠義衛孫光曙前明文

이 구문은 노비매매의 사실을 밝히어 작성해 주는 明文의 첫부분으로, 대개 大國年號, 干支, 月日, 明文하는 객체(買得의 당사자) 등을 알게 해준다.

嘉靖 27년은 明宗 3년(1548)에 해당한다. 前은 ‘-에게, -앞에’라는 뜻이다. 같은 뜻으로 處가 쓰이기도 한다. 明文은 어떤 일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는 글로, ‘증서, 증

18) 次 朝례 朝, 7음 次 <신합 상3>

명서'란 뜻이다.

3.2.1') 嘉靖 27년 戊甲(명종3, 1548) 11월 13일 총의위 손광서에게 밝히는 文記.

3.2.2. 右明文爲臥乎事段

이 구문은 明文 전체의 주어에 해당하며, 결사부분인 辨正爲乎事亦在(辨正乎을일여견 : 옳고 그름을 가릴 일이라는 것)과 호응한다.

右는 '임/우 흥'로 읽히며, '위[에]'라는 뜻이다. 爲臥乎事段은 '후 누온일돈'으로 읽히며, '-하는 일인 즉은, -하는 일의 뜻[것]은'의 뜻이다. 동사어간 爲와 현재의 선어말어미 臥(-누-), 동명사어미 平(-ㄴ), 명사 事(일), 그리고 의존명사(두)와 주제의 'ㄴ'의 결합형인 段(돈)의 결합이다. 무정명사의 뒤에 붙는 속격조사 叱(ㅅ)는 대개 생략 표기된다.

明文의 서두부분은 明文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다. 본 문기와 같이 제목 부분과 右明文爲臥乎事段(위에 밝히는 일인 즉은)의 구문이 구분되어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구분이 없이 -處明文爲臥乎事段(-에게 明文하옵는 뜻은)의 구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3.2.2') 위에 明文하는 일인 즉[것, 뜻]은

3.2.3. 矣身亦貧寒所致以母邊傳來婢加大壹所生婢從非年貳拾壹戊子生同從非壹所生
婢桃花年壹戊甲生等二口乙折楮貨伍千張價本良中常木綿捌同交易依數擡上爲
遣

矣身亦은 '의몸여'로 읽히며, '이몸이, 내가'의 뜻이다. 1인칭 대명사 矣身(이몸)과 주격조사 亦(여)의 결합이다. 矣身은 明文하는 주체자로, 기원적으로는 속격의 矣와 명사 身이 결합한 형태이다. 亦은 음가자 '역'에서 'ㄱ'이 탈락한 것이다. 所致는 '까닭'의 뜻으로, '詮次'로 혼용되기도 한다. 以는 원인을 뜻하는 구격 '(으)로'의 표기이다. 邊은 '고, ㄱ'로 읽히며, '-쪽[의]' 정도의 뜻을 나타낸다. 노비의 傳來處를 뜻하는 말이다. 傳來는 물려받아 전하여 온다는 뜻이다. 等은 '둘'로 읽히며, 복수

접미사 ‘동’의 표기이다. 乙은 대격 ‘을’의 표기이다.

所生은 낳은 자식의 뜻으로, 壹所生은 첫째의 자식이란 뜻이다. 노비의 나이와出生干支는 대개 노비의 이름 뒤에 표기하고 있다. 해독상 이는 팔호 안에 넣을 법한 것이다. 折은 折價의 뜻이며, ‘어떤 물건의 값으로 작정하거나 쌤하다’는 뜻이다. 張(장)은 丈과 혼용되며, 종이돈 따위를 세는 수량단위명사이다.

楮貨는 턱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 돈으로, 고려시대부터 사용되었으나, 16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通用貨幣로 쓰이지 않고 노비나 토지 따위를 매매하는 가격의 기준 역할을 하였다. <경국대전>에는 16~50세의 장년 奴의 값을 楮貨 4000장, 16세 이하 51세 이상인 奴는 楮貨 3000장으로 규정하였다. 조선 태종 때 楮貨 한 장은常五升木 한 필(匹), 쌀 두 말(斗)로 정했으나, 楮貨의 값은 갈수록 하락하였다.

良中은 ‘아히’로 읽히며, 처격 ‘-에’의 뜻이다. 常木綿는 품질이 낮은 무명베로, 三升木¹⁹⁾을 말한다. 同은 ‘동’으로 읽히며, 무명 따위의 피륙 50필(匹)을 한 묶음으로 세는 수량단위명사이다.²⁰⁾ 摶上爲遣는 ‘받자 亨고’로 읽히며, ‘받아들이고, 받고’의 뜻이다. 摶上(받자>밧자)은 물품이나 돈 따위를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爲遣(亨고)은 동사어간 爲와 연결어미 遣의 결합이다.

3.2.3') 이몸이 가난한 까닭으로, 어머니 쪽에서 물려받아 전하여 오던 계집종 加大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從非(스무 살, 戊子생), 위의 從非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桃花(한 살, 무갑생)들 두 구를 楮貨 오천 장의 값에 결정하여, 常木綿 여덟 동과 바꾸고 정한 가치에 따라 받아들이고

3.2.4. 後所生并以永永放賣爲去乎幸有後次子孫及同腹等爭望隅有去等

後所生은 매매한 뒤에 태어나는 所生의 뜻이다. 并以는 ‘아오로’²¹⁾로 읽히며,

19) ‘무명’은 문헌에 木綿, 緜布, 木 등으로 기록되고 색·품질·용도에 따라 여러 이름이 있다. 특히 무명의 품질은 샛수(升數)로 가늠하는데, 샛수가 많을 수록 고급품이다(三升木, 五升木, 六升木, …, 十二升木, …, 十五升木, …, 二十一升木). 새(升)는 무명 따위의 피륙의 날을 세는 단위로 한 새(升)는 보통 날실 여든 올이다.

20) 五十匹爲一同 <명종실록>(14, 8년2월경오) / 緜布三十五尺一疋 五十疋爲一同 <대동야승>(3, 수문쇄록)

21) 아움과 國王과 … 居士와 아오로 되화 = 并會親族과 國王과 … 居士 허야 <법화2:222>
并 아울 병 <신합, 하:48, 천자광 26> / 並 아오다 … 又兼 허다 <동해, 허:58>

‘[-도, 과] 아울러, [-도, 과] 함께, 모두’의 뜻이다. 永永은 ‘영원히, 오래도록’의 뜻이다. 放賣는 물건 따위를 내놓아 판다는 뜻이다. 爲去는 ‘행여온’으로 읽히며, ‘하였으니’의 뜻이다. 동사어간 爲와 과거, 강조, 확인을 뜻하는 선어말어미 去(-거-), 원인·이유의 연결어미 平의 결합이다. 同腹은 같은 어머니의 배에서 난 형제자매를 말한다. 等은 복수의 접미사 ‘들’의 표기이다. 爭望은 재산 따위를 다투어 바란다는 뜻이다. 隅은 혼독자로, ‘모항’로 읽히며, 의미는 중세국어의 ‘틈, 불화’의 뜻을 가진 ‘틈(隙)’, ‘즈슴(間)’에 가깝다.²²⁾ 有去等은 ‘잇거든’으로 읽히며, ‘있거든, 있거들랑’의 뜻이다. 동사어간 有(잇-)과 미래 또는 假想의 선어말어미 去(-거-), 연결어미 等(-든)의 결합이다. 有(잇-/이시-)은 有叱에서 叱(ㅅ)을 생략한 표기이다. 去等은 去乙等(-걸든)으로 표기하기도 하며, 현대국어의 ‘-거든, -거들랑’에 대응한다.

3.2.4') 나중에 [태어나는] 所生도 아울러 영원히 내어 팔았으니, 나중에 子孫과 同腹들이 다투어 바라는 틈[불화]이 있거들랑

3.2.5. 此明文內貌如告官辨正爲平事亦在

此는 ‘이’로 읽히며, 지시대명사 ‘이’의 표기이다. 內는 ‘안 > 안’으로 읽히며, ‘[明文]의 내용’이란 뜻이다. 貌如는 ‘뜻다이’, 聰다²³⁾로 읽히며, ‘모양대로, 취지[뜻]대로, 뜻과 같이’의 뜻이다. 貌는 貌만(중)에서 叱(ㅅ)을 생략한 표기이다. 명사 貌(중>뜻)

22) 隅(우)가 이두자나 아니나, 이두라면 독음과 뜻은 무엇이나 하는 문제는 좀 더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승재(1989)는 ‘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풀고, 정구복(1991)에서는 이두자로 보고, 독음은 ‘우’, 뜻은 ‘쪽, 者’로 풀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階의 한자 訓과는 거리가 있다. 우리는 중세국어의 ‘모항’의 표기로 보고, 의미는 ‘틈(隙), 즈슴(隔,間)’에 대응되는 이두자로, 현대어 ‘불화’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파악한다.

隅 모퉁이 우 <웨어, 상:11> / 路隅 길 모퉁이 <동해, 상:41>

四方이 서면 그四方애 네 모히 조출석 <석보 19:13> / 東城へ 모해 오래 서서(佇立東城隅) <두해-초 15:3>

菩薩애 劣하시고 聲聞에 더으샤 孟季へ 스스메 겨실석 일후미 號支佛이라 = 劣於菩薩하시고 勝於聲聞하사 在孟季之間 히실석 號支佛이라 <선집, 하:46> / 외로원 너순 오란 나그내 드외양는 즈스미로다(孤魂久客間) <두해-초 24:44>

23) 貌 聰 모 俗稱模樣 又曰様範 <훈몽-초 상:12> / 貌 聰 모 <신합 하:1>

貌如는 종래 史讀副詞로 다루는 경우가 있었으나,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는 명사 貌(뜻)와 특수조사 如(다비)의 결합이다. 필자의 (1992 고·노, 1994)에서 부사류 이두로 다루었던 것을 여기서 바로 잡는다.

과 특수조사 如(다비)>다이)의 결합이다. 辨正은 '변정'으로 읽히며, '옳고 그름을 따져 바로 잡는 것'을 뜻한다.²⁴⁾ 卞正, 辨正, 辨卞 등으로 쓰이기도 한다. 爲乎事는 '혹 올일'로 읽히며, '할 일, 하올 일'의 뜻이다. 동사어간 爲와 동명사어미 平(을), 명사 事의 결합이다. 동명사어미 平는 문맥상황에 따라 과거의 '온'과 미래의 '올'로 쓰임에 주의해야 한다. 亦在는 '이여전'으로 읽히며, 제사 是(이-)가 생략 표기되었다. '이라는 [뜻, 것]'의 뜻이다.

3.2.5') 이 밝히는 文記 안의 뜻대로 관에 알려서, 옳고 그름을 따져 바로 잡을 일이라는 것.

3.2.6. 婢主 駔女 於乙今 (右寸) / 證 張內隱長 (手決) / 筆執 學生 曹邦善 (手決)

婢主는 계집종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駔女(일여)는 駔站에서 심부름 따위를 하는 여자라는 뜻으로, 駔人과 같은 말이다. 右寸은 관직이 없는 여자가 하는 手決의 일종이다. 수결을 할 때, 사내종은 左寸이라 하여, 원손의 가운데 손가락의 첫째와 둘째 마디 사이의 길이를 채어 그림을 그려서 도장 대신으로 썼고, 평민인 여자의 경우는 右寸이라 하여, 오른쪽의 손가락 마디를 그려 넣어 도장을 대신하였다. 證은 證人이라는 뜻으로, 證保로 표기되기도 한다. 筆執은 明文을 쓴 사람으로, 執筆人의 뜻이다. 學生은 벼슬을 하지는 못했으나 학문을 닦는 사람, 또는 평민을 높이어 그렇게 부른 것이다.

3.2.6') 계집종의 주인 : 駔女(일녀) 얼금 (우촌) / 증인 張內隱長 (수결) / 집필인 학생 조방선 (수결)

이상이 노비매매의 明文 내용이고, 다음은 買受人인 駔女 於乙今의 招辭이다. 招辭는 判官의 審問에, 죄인 등이 범죄 사실 따위를 진술하는 말을 뜻한다. 招辭 역시 明文 뒤에 접련하여, 접련처에 관인을 받고 보관한다.

3.3.1. 戊甲十一月十六日 / 婢主駔女於乙今年五十五

24) 엊디 고든 밀 헉야 스스로 변경 아니 헉니다(何不直言自辯) <동신, 총1:5>

이 구문은 관의 推閱에 대한 賣渡인의 招辭(진술서)의 첫머리로, 진술한 내용의 전체 주어에 해당한다. 결사부분인 放賣爲白事是良尅(放賣하옵는 일이기에)과 호응한다. 招辭를 한 연월일과 매도인의 직위와 성명, 나이 등을 알 수 있다.

3.3.1') 무갑년(명종3,1548) 11월 16일 / 계집종의 주인 駟女(일여) 얼금(쉰 다섯 살)이

3.3.2. 白等節呈忠義衛孫光曙所志內乙用良推考數是臥乎在亦

白等은 ‘술둔’으로 읽히며, ‘아뢰옵는 것은, 아뢰는 것은, 아뢰는 일인 즉은’의 뜻이다. 동사어간 白(술-)과 의존명사 ‘두’와 주제의 특수조사 ‘ㄴ’의 결합형인 等(둔)의 결합이다.²⁵⁾ 節은 ‘디위>지위’로 읽히며, ‘이번[에], 때[에]’의 뜻이다.²⁶⁾ 內는 ‘안승’으로 읽히며, ‘文書의 내용’의 뜻이다. 乙用良은 ‘을쓰아/을써’로 읽히며, ‘-을 써서, -을 사용하여 / -으로써’의 뜻이다. 대격 乙(을)과 동사어간 用(쓰-), 부동사어 미 良(아/어)의 결합이다. 乙用良은 현대국어의 조사 ‘-으로써’에 대응하는 조사로 다루기도 한다. 推考는 어떤 일에 대한 죄과를 推問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數是臥乎在亦은 ‘이시누온견이여’로 읽히며, ‘하시는 것이라, -하시는 것이기에 [이므로]’의 뜻이다. 존경의 동사어간 數是(하시-)와 현재의 선어말어미 臥(-ㄴ-),²⁷⁾ 동명사어미 乎(온), 과거 사실의 지속을 뜻하는 ‘-겨-’와 동명사어미 ‘ㄴ’의 통합형인 在(-견-), 종결어미 亦(-이여)의 결합이다.亦은 원래 ‘여’로 읽히는데, 이 경우 ‘이여’로 읽히는 것은 앞에 오는 在(-견-)의 영향이다.

3.3.2') 아뢰옵는 것은, 이번에 [관에] 올린 忠義衛 孫光曙의 所志 안(趣旨)을 써서 推考하시는 것이다

25) 白等도 재차 논의되어야 할 史讀다. 곧 等은 이전에 연결어미로 보기도 하였으나, 의존명사와 주제의 특수조사의 결합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

26) 이 經을 마운 아홉 디위 낚고 <석보 9:32> / 혼 디위 노픈 하늘해 물고쳐 너기노라(一擬問高天) <두해초 7:32>

人間에서 能히 시리곰 멋 디위를 드리리오 … 崔 九의 집 알찌 멋 지월 드려뇨(人間能得幾回聞 … 崔九堂前幾度聞) <두해중 16:53>

27) 이 때의 在(현재)는 去(과거 : 爲去乎在亦)와 대립한다. 그러나 ‘-去等, -去乙等’의 去는 미래 또는 예정의 뜻으로 쓰인다.

3.3.3. 女矣身亦艱難所致以母邊傳來婢加大壹所生婢從非年貳拾壹戊子生同從非壹
所生婢桃花年壹戊甲生等貳口乙折楮貨伍千張價常木綿捌同捧上爲遺

女矣身亦는 ‘여의몸여’로 읽히며, ‘여자의 몸이, 이 몸이’의 뜻이다. 女矣身은 원래 ‘여자의 몸’에서, 明文하거나 말하는 주체가 여자인 경우에 사용되어, 1인칭 대명사 ‘이 몸’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주체가 남자인 경우는 汝矣身(너의 몸 : 나)을 쓴다.²⁸⁾ 명사 女(여자)와 속격 矣(의), 명사 身(몸), 주격조사 亦(여)의 결합이다. 亦은 현대국 어의 주격조사 ‘이/가’에 대응한다. 以는 구격조사 ‘로’의 표기이다. 이하의 설명은 앞의 明文 해독을 참고하면 된다.

3.3.3') 이몸이 가난한 까닭으로 어머니 쪽에서 물려받아 전하여 오던 계집종 加
大的 첫째 소생인 계집종 從非(스물 한 살, 무자생), 위 계집종 從非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桃花(한 살, 무갑생)들 두 구를 楷貨 오천 장의 값으로 결정
한 常木綿 여덟 동을 받아들이고

3.3.4. 後所生并以永永孫光曙亦中放賣爲白事是良専相考施行數事

并以는 ‘아오로’로 읽히며, ‘아울러, 함께, 모두’의 뜻이다. 亦中은 ‘여의’로 읽히며, 여격조사 ‘에게’의 뜻이다. 爲白事는 ‘향수[온] 일/향온일’로 읽히며, ‘하옵는 일, 하사온 일’의 뜻이다. 동사어간 爲와 겹양의 선어말어미 白(-습), 명사 事(일)의 결합이다. 동명사어미 乎(-ㄹ)는 생략 표기된 것이다. 是良専는 ‘이아금’으로 읽히며, ‘-이라기에, -이기에, -이므로’의 뜻이다. 계사 是(이)-와 원인 ·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良専’의 결합이다. 相考는 서로 견주어 고찰하다는 뜻이다. 數事는 ‘이실일/이 살일’로 읽히며, ‘하실 일, 행하실 일’의 뜻이다. 존경의 동사어간 教(하시-)와 동명사어미(-ㄹ), 명사 事(일)의 결합이다. 동명사어미는 흔히 생략 표기된다.

3.3.4') 나중에 [태어나는] 所生도 아울러 영원히 손광서에게 放賣하옵는 일이기
에, 서로 견주어 고찰하여 施行하실 일.

28) 矣身은 주체인 남여 모두를 지칭할 때 사용된다. 그리고 汝矣身을 ‘너의 몸, 너’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3.3.5. 白 / 府尹 (手決) 行判官

白은 '아뢴다'는 뜻으로, 婢主 駕女가 아뢰는 것이다.

府尹은 경주부의 종2품의 으뜸벼슬이다. 行은 行守法(行職·守職을 수여하는 법)의 行이다.²⁹⁾

3.3.5') 아룀 / 부윤 (수결) 행판관

이상이 財主가 진술한 내용이다. 다음은 證人과 筆執의 진술 내용이다.

3.4.1. 同日學生曹邦善年四十九 張內隱長年六十

이 구문은 증인과 筆執, 두 사람이 招辭한 서두부분으로, 진술한 내용의 전체 주어이다. 결사부분인 成文爲乎事是良尙(成文하온일이아금 : 文記를 작성한 일이므로)와 호응한다. 賣渡者의 招辭와 같이 관에 낸 것이기에 간지가 같은 날로 되어 있다.

3.4.1') 같은 날 학생 조방선(마흔 아홉 살), 장내은장(예순 살)이

3.4.2. 白等節呈忠義衛孫光曜所志內乙用良推考教是臥乎在亦

白等은 '늙은'으로 읽히며, '아뢰는 것[뜻]은, 아뢰는 일인 즉은'의 뜻이다. 白은 동사어간 '늙', 等은 의존명사 '드'와 주제의 특수조사 '-ㄴ'이 결합된 표기이다. 節은 '다위>지위'로 읽히며, '이번[에]', 때[에]'의 뜻이다. 內는 '안~'으로 읽히며, '所志의 뜻이나 내용'의 뜻이다. 乙用良은 '을쓰아/을뼈'로 읽히며, '-을 써서/-으로써'의 뜻이다. 教是臥乎在亦은 '이시누온견이여'로 읽히며, '-하시는 것이라, -하시는 뜻인 것이라'의 뜻이다. 존경의 동사어간 教是와 현재의 臥(-ㄴ-), 동명사어미 乎(-ㄴ),

29) 보임된 관직(實職)이 그가 이미 받은 바 있는 품階에 상응하는 관직보다 낮은 직(卑職)인 경우에 이를 行 또는 行職이라 한다. 결국 관직이 품계보다 낮은 경우 行을 쓰는데, 직함을 쓸 때 품계 뒤 관사명 앞에 쓰게 되어 있었다. 즉 먼저 품계를 쓰고, 다음에 行을 쓰고, 다음에 관사와 직사를 쓰게 되어 있었다.

과거 사실의 지속의 在(-겨-), 동명사어미, 종결어미 亦(이여)의 결합이다.

3.4.2') 아뢰옵는 것은, 이번에 올린 총의위 손광서의 所志 안을 써서 推考하시는 것이라

3.4.3. 驛女於乙今亦艱難所致以其母邊傳來婢加大壹所生婢從非年貳拾壹戊子生回
從非壹所生婢桃花年壹戊甲生等貳口乙折楮貨伍千張價常木綿捌同捧上爲遣

亦은 '여'로 읽히며, 주격조사 '이/가'의 뜻이다. 以는 구격 '(으)로'의 표기이다. 그는 '저'로 읽히며, 3인칭 대명사 '저, 그'의 뜻으로 쓰인다. 同은 '오한'으로 읽히며, '같은'의 뜻이다. 等은 복수의 접미사 'etc.'의 표기이다. 乙은 대격 '을'의 표기이다. 同은 '동'으로 읽히며, 무명 따위의 50필을 한 묶음으로 세는 단위이다. 捧上爲遣는 '받자하고'로 읽히며, '받아들이고, 받고'의 뜻이다. 내용은 明文 내용의 반복이다.

3.4.3') 驛女(일여) 얼금이 가난한 까닭으로 그의 어머니 쪽에서 전래하던 계집종 加大的 첫째 소생인 계집종 從非(스물 한 살, 무자생), 위 계집종 從非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桃花(한 살, 무갑생)들 두 구를 楷貨 오천 장의 값으로 결정한 常木綿 여덟 동을 받아들이고

3.4.4. 後所生并以孫光曙亦中永永放賣爲去乙矣徒等亦證筆執以同署名成文爲乎事
是良尗相考施行數事

爲去乙은 '흐거늘'로 읽히며, '-하거늘, -하였거늘'의 뜻이다. 동사어간 爲와 과거 사실 확인의 선어말어미 去, 원인·이유의 연결어미 乙(-늘)의 결합이다. 矣徒等亦은 '의내돌여'로 읽히며, '이내들이, 저희들이'의 뜻이다. 인칭 대명사 矣와 복수의 徒(내),³⁰⁾ 복수의 접미사 等(etc.), 주격조사 亦(이)의 결합이다. 以는 구격의 '로'의 표기다. 同은 '오한'으로 읽히며, '같이, 함께'의 뜻이다. 爲乎事는 '흐온일'로 읽히며, '하

30) 徒(내)는 중세국어의 복수접사 '-내'에 대응한다. 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徒를 1인칭 복수접사 '-희'에 대응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고려할 여지가 있다.

온 일, 한 일'의 뜻이다. 의도법 선어밀어미와 동명사어미의 결합형 乎는 문맥상황에 따라 과거와 현재의 뜻으로 쓰이는 데 주의해야 한다. 是良尔는 '이아금'으로 읽히며, '-이기에, -이므로'의 뜻이다. 教事는 '이실일'로 읽히며, '-하실 일'의 뜻이다.

3.4.4') 나중에 [태어나는] 所生도 아울러 손광서에게 영원히 放賣하거늘 저희들이 이 증인과 筆執으로 함께 署名하고 文記를 작성한 일이기에, 서로 견주어 살펴서 施行하실 일.

3.4.5. 白 (手決) / 白 (手決) / 府尹 (手決) 行判官

아뢰어 수결한 전자는 증인의 것이고, 후자는 筆執의 것이다.

3.4.5') 아름 (수결) / 아름 (수결) / 부윤 (수결) 행판관

이상은 증인과 필집의 招辭이다. 다음은 위의 所志、明文, 招辭 등을 근거로 하여, 이를 인증하기 위해 관에서 내준立案이다.

3.5.1. 嘉靖二十七年十一月 日慶州府立案

이 부분은 입안의 서두부분으로, 大國年號와 입안 발급기관이 명시된다. 慶州府는 입안 발급기관으로, 지금의 慶州이다. 立案은 백성의 낸 訴狀이나 願書 등을 비교하여 확인한 뒤에 내주는 관의 인증서를 말한다.

3.5.1') 가정27년(명종3, 1548) 11월 일 경주부 입안

3.5.2. 右立案爲斜給事

右는 '임/이의'로 읽히며, '위의 [내용, 사람]'을 뜻한다. 斜給(빗급)은 '토지·노비 따위의 소유권 등에 대하여, 관에서 인증하여 빗기어 내주는 것'을 말한다. 事는 '일'로 읽히며, 명사 '일' 또는 의존명사 '것'의 뜻이다.

3.5.2') 위에立案을 빗기어 내 주는 일은

3.5.3. 粘連所志明文及各人招辭是置有亦

粘連은 文記 따위를 빌라 붙여서 이어나간 것을 말한다. 及은 훈독자로, '및'으로 읽힌다. 현대국어의 접사 '및'(그 밖에 또)에 대응한다. 招辭는 증인과 필집 따위의 진술서를 말한다. 是置有亦은 '이두이신이여'로 읽히며, '있는 것이라, 있는 것이기에'의 뜻이다. 계사 是와 과거의 선어말어미 置有(뒷-/두어 이시-),³¹⁾ 동명사어미, 연결어미 亦(이여)의 결합이다.

3.5.3') 粘連한 所志、明文 및 각 사람의 招辭(진술서)가 있는 것이라

3.5.4. 傳來賤籍推納相考爲乎矣

賤籍은 賤人們의 소속과 이름이 적혀있는 호적, 곧 노비에 대한 戶籍을 말한다. 推納은 推尋(찾아 냄)하여 바치는 것을 말한다. 爲乎矣는 '흐오듸'로 읽히며, '하오되, -하되'의 뜻이다. 동사어간 爲와 의도법 선어말어미 乎, 조건의 연결어미 矣(-듸)의 결합이다.

3.5.4') 전래하는 노비의 戶籍을 서로 견주어 살피되,

3.5.5. 正德元年丙寅二月初八日女子於乙非亦中別給文記內

正德은 중국 명나라 무종 때의 연호(1506~1521)로, 원년은 1506년(연산군12)이다. 亦中은 '여희'로 읽히는 여격조사이다. 女子는 '딸'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別給文記는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토지·노비 따위의 재산을 특별히 준다고 하는 것을 적어 준 문기이다.

31) 置有는 기원적으로는 각각 동사어간이었을 것인데, 이 경우에 통합구조상 복합동사어간으로 처리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3.5.5') 정덕 원년 병인년(1506, 연산군12) 2월 초 8일에 딸 얼비에게 별도로 만들 어준 文記 안에

3.5.6. 母邊傳來婢閔今二所生婢加大年拾丁已生財主故孫寅妻驛女召史着手寸證四寸李莫同筆執百姓金同等同署名白文記是齊

召史는 ‘조이’ 또는 ‘소사’로 읽히며, 양민의 아내³²⁾ 또는 賤民을 포함한 民間의 여인을 지칭한다. 주로 性 밑에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驛女召史라고 하여, 驛女의 이름으로 쓰인 점이 특이하다. 婢의 이름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手寸은 벼슬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도장 대신 사용하는 手決의 일종인데,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의 첫째와 둘째 마디 사이의 길이를 쟤어 그림을 그리는 右寸과 왼쪽의 가운데 손가락의 첫째와 둘째 마디 사이를 쟤어 그림을 그리는 左寸이 있다. 전자는 계집종을 포함한 여자의 경우에 하고, 후자는 사내종을 포함한 남자의 경우에 한다. 百姓은 서민이라는 뜻이다. 署名은 手決을 의미한다.³³⁾ 白文記는 관인이 찍히지 않은 문서, 곧 관에서 인증해 주지 않은 문서를 말한다. 是齊는 ‘이제’로 읽히며, ‘-이다’의 뜻이다. 계사 是와 종결어미 齊의 결합이다. 齊는 문맥에 따라 바람 또는 간접적인 명령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3.5.6') “어머니 쪽에서 물려받아 전하여 오던 계집종 윤금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加大(열 살, 정사생)를, 재주인 죽은 손인의 처 驛女 조이가 手寸을 하고, 증인은 사촌인 이막동, 필집은百姓인 김동들이 함께 서명”하였다는 白文記가 있다.

32) 召史 조이 良民之妻 稱召史 <고금석림>(40,羅麗吏讀, 釋名) / 召史 조이 間巷女人之稱號 <行用吏文>

召史(조이)는 양민의 아내를 지칭하며, 주로 姓 밑에 붙여 쓰인다고 알려졌지만, 古文書에서 婢의 이름으로 쓰이기도 한 것으로 보아,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靈光婢潛眞一所生婢鬱鷺年八同婢二所生婢鬱鷺年六慶源奴李生良妻五所生婢召史年等五口身永永許給爲去平 / 영광의 계집종 잠진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앵무(여덟 살), 같은 계집종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앵무(여섯 살), 경원의 사내종 李生 良妻의 다섯째 소생인 계집종 조이(몇 살)들의 다섯 구를 영원히 허가하였으니 <고문서집성3>(별급문기7)

33) 署名과 비슷한 뜻으로 手決(슈결), 手例(슈례)가 있으며, 고유어로는 ‘처’(押, 花押)가 있다.署 마술 서 又權任官曰署官又曰單官 又 处 서 花押 <훈몽초, 중4>

3.5.7. 嘉靖七年戊子正月廿五日子息五男妹許與內

許與는 토지나 노비 따위의 재산을 나누어주는 것, 또는 그러한 것을 적은 文記를 뜻한다. 곧 許與文記라는 뜻이다.

3.5.7') 가정7년 무자년(1528, 중종23) 정월 25일에 자식 다섯 남매에게 許與해 준
(文記) 안에

3.5.8. 二女於乙今衿婢加大一所生婢從非年一戊子生是如財主孫斤守妻於乙非着手寸證保學生李上佐筆執學生辛延孫等同着名署成置爲等如白文記是乎等用良

二女는 둘째 딸이란 뜻이다. 衿은 '깃>깃'³⁴⁾으로 읽히며, '토지나 노비 따위의 재산을 나누어 주거나 받은 뜻'의 뜻이다. 중세국어의 '깃>깃, 목(分)'의 뜻이다. 是如는 '이다/이라'로 읽히며, '이라[고]'의 뜻이다. 계사 是와 종결어미 如(다)의 결합인데, 이때는 인용법어미 '-이라'로 쓰인다. 等은 복수접미사 '뚫'의 표기이다. 同은 '오헌'으로 읽히며, '함께, 같이'의 뜻이다. 爲等如는 '흐드려, 훈돌다이'로 읽히며, '-한 것들대로, -한 것들과 같이'의 뜻이다. 동사어간 爲와 동명사어미(-ㄴ), 의존명사 等(etc), 특수조사 如(다비)의 결합이다.³⁵⁾ 是乎等用良은 '이온돌쁘아'로 읽히며, '-인 것을 써서, -인 것이기 때문에'의 뜻이다. 계사 是와 동명사어미 乎(-ㄴ), 의존명사 等(etc)와 대격(ㄹ), 동사어간 用(쓰-), 부동사어미 良(아/어)의 결합이다. 乙用良(또는 用良)은 원인의 뜻을 나타내는 '-때문에' 정도로 해독된다.

34) 세간늘 세 기제 논화(共割財產 以爲三分) <이륜초 4>

도늘 가져 내야 오니 千貫이 잊거늘 세 기제 논하야 혼 기즈란 어미 주어 지비서 써게
하고 혼 기즈란 어미 주어 三寶 供養하야 아비 爲하야 날마다 五百僧齋하고라 혼 기즈
란 제 가져 金地國에 흥경하라 가니라 <월석-중 23:72~73>

周易에 널오되 天地へ 化丨萬物을 委曲히 일우고 기티디 아니라 혼니라(周易繫辭中所說
天地之化 委曲成就萬物而不遺漏) <원각, 서:18> / 遺 기틸 유 <신합, 하:13>

35) 爲等如의 구성은 동사어간 爲+복수의 等(etc)+부사과생접사 如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等은 의존명사 'etc'의 표기로 볼 수도 있으나, 爲等如 앞에는 대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나열
하기 때문에 복수의 '뚫'의 표기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

3.5.8') “둘째 딸 열금의 뜻은 계집종 加大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從非(한 살, 무자생)”이라 하고 재주는 손근수의 처 열비가 手寸을 하고, 증보는 학생 이상좌, 필집은 학생 신연손들이 함께 서명하여서 만들어 둔 것대로의 白文記인 것이기 때문에

3.5.9. 向前婢從非及同婢所生婢桃花等乙良買得爲在忠義衛孫光曜亦中斜給合行立案者

向前은 ‘아전(古今)’으로 읽히며, ‘앞전, 이전, 앞’의 뜻이다. ‘앞, 이전’의 뜻을 가진 向과 前이 중복 결합된 복합명사이다.³⁶⁾ 같은 [바로 앞에 언급한] 같은 [사람이나 내용]’을 뜻하는 데 반해, 向前은 ‘[바로 앞이 아닌] 앞전[에 말한 사람이나 내용]’의 뜻을 가지고 있다. 同은 ‘오한’으로 읽힌다. 等乙良은 ‘돌흘란’으로 읽히며, ‘-들을랑’의 뜻이다. 等은 복수의 접사 ‘둘’의 표기이고, 乙良은 중세국어의 ‘으란, 을랑’에 대응하는 특수조사 표기이다. 爲在는 ‘후견’으로 읽히며, ‘-한’의 뜻이다. 동사어간 爲, 과거 사실 지속의 ‘-겨’와 관형사형어미의 결합형 在(-견-)의 결합이다. 亦中은 ‘여히’로 읽히며, 여격조사 ‘에게’의 뜻이다. 合行은 마땅히 거행한다는 뜻이다.³⁷⁾

3.5.9') 앞전의 계집종 從非와 같은 계집종의 所生인 계집종 桃花들을랑 사서 얻은 충의위 손광서에게 빚기어 내 주는 것이 마땅한 立案이라는 것

3.5.10. 府尹 (手決) / 行判官

3.5.10') 부윤 (수결) / 행판관

36) 向前을 ‘지난 번’의 뜻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前 … 向前 矣흐로 <동해, 상9> / 前 矣 暣 <훈몽초, 하:15>

아랫 恩惠를 너저 뿌리사 길넓 사람과 그티 너기시니 <석보 6:4~5>

이 相을 아嬖 보디 몯흔엣다니 = 未曾見是相이라니) <법화 3:118>

三生 前에 아래 모딘 藥을 두어 누이 命을 주기니(乃於三生之前 曾置毒藥 殺害他命) <불정 10>

37) 合行과 비슷한 뜻으로 合下가 있는데, 이 合下를 ‘이에’로 풀이하는 것(최승희:1981)은 어색하다.

4. 마무리

지금까지 16세기 중반의 노비매매문기의 이두문과 이두를 해독하고 분석하였다. 문기의 분량이 비교적 간단하고, 이두문과 거기에 쓰인 이두가 평이한 것들이어서, 해독의 어려움은 거의 없었다.

위에서 논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하여, 이두의 형태와 의미를 품사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결론을 대신한다.

4.1. 명사류 이두

일반명사 : 右(우 흐/위), 事(일/일), 隅(모 흐/틈), 貌(줏/모양), 節(디위/때), 內(안 흐/안), 斜出(빗출/빗기어 내줌), 行下(行하:내려 줌), 捧上(받즈/받아들임), 斜給(빗급/빗기어 줌), 召史(조이), 向前(아전/앞전), 所志(소지), 辨正(변경) 의존명사 : 等(드), 次(초/차), 等(등/복수)

인칭대명사 : 矢身(의몸/이몸), 女矣身(여의몸/이몸), 矢徒等(의내동/이내들, 저희들)

수량단위명사 : 同(동), 口(구), 張(장)

4.2. 조사류 이두

亦(여/주격 '이'), 乙(을/대격), 矢(의/처격 '에'), 叱(ㅅ/처격 'ㅅ'), 亦中(여 흐/여격 '에게'), 良中(아 흐/처격 '의/의'), 以(로/구격 '로'), 等(ㄴ/주제), 如(다비/대로), 乙良(으 란/을랑)

4.3. 부사류 이두

并以(아오로/아울러), 及(밋), 永永(영영)

4.4. 동사류 이두

爲(흐-/-삼-), 望良(부라-), 向(앞-), 有(잇-), 白(백-), 用(쓰-), 教是(이시-), 是(이-), 教(이시-)

4.5. 어미류 이두

白(-백-/겸양), 去1(-거-/과거 또는 확인), 去2(-거-/미래 또는 假想), 教是(-이시-/존경), 在(-겨-/과거 사실의 지속), 臥(-누-/현재), 有(-잇-/과거), 平(-오-/의도법), 置有(두 잇/과거)

奴婢賣買文記의 史讀文과 史讀 解讀

遣(고/-고), 良結(아껴/-아껴), 亦(이여/-라), 乎(온), 等(-든), 良(아)/이), 良尙(아금),
乙(을), 矣(오드), 齊(제)

只(-기), 在(-ㄴ/현재), 乎1(온, -ㄴ/현재), 乎2(-ㄹ/미래)

참고문헌

- 고정의(1991), “대명률직해의 이두 연구”, 단국대 대학원.
- 김재문(1991), “조선왕조의 거래법”, <한국법사학논총>(박병호교수환갑기념 II),
- 남풍현(1974), “13세기 노비문서와 吏讀”, <논문집>8, 단국대.
- 남풍현(1979), “16세기초의 한 명문의 해독”, <단원>11, 단국대 학생회
- 남풍현(1992), “고문서의 이두 해독 -유경공신녹권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15-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박병호(1974), <한국법제사고-근세의 법과 사회>, 법문사.
- 서종학(1990), “이두의 문법형태표기에 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 연정열(1991), “조선 초기 노비상속과 증여에 관한 한 연구”, <한국법사학논총>(박병호교수환갑기념 II),
- 오창명(1987), “비변사등록의 이두 연구”, 단국대 대학원.
- 오창명(1993-), “제주계록의 이두와 이두문에 대한 연구”, <제주도사연구>2, 제주 도사연구회.
- 오창명(1993-), “<민문총공주의>의 이두 연구”, <어문학논총>(근재양순필박사화감 기념논총)
- 오창명(1995), “<탐라계록>의 이두문과 이두 해독”, <탐라문화>15,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이승재(1989), “고려시대의 이두에 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 정석종(1983), “조선후기 노비제도의 변화-노비매매문기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사회변동연구>, 일조각.
- 최승희(1981), <한국고문서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 <한국사학>9.
- 한상인(1993), “대명률직해 이두의 어학적 연구”, 충남대 대학원.